

충청북 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26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개정이유

- 국가 및 각급지방자치단체간의 지급기준액의 형평성 유지
- 각종 시험시행관련 수당의 현실화

2. 주요골자

- 시험감시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감시수당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기 위한
- 개정내용
 - 감시수당 (일당) 공휴일 20,000원을 ⇒ 30,000원으로
 - 평 일 10,000원을 ⇒ 15,000원으로

3. 조례개정(안) 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[별표] 의 감시수당란중 “공휴일 20,000원”을 “공휴일 30,000원”으로 하고,
“평일 10,000원”을 “평일 15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]

시험수당지급구분표

현행				개정(안)					
수당별	구분		수당액	비고	수당별	구분		수당액	비고
출제수당	객관식	(생략)			출제수당	객관식	(현행과 같음)		
	주관식					주관식			
채점수당	객관식				채점수당	객관식			
	주관식					주관식			
면접 및 실기 시험수당	5급 이상 (일당)				면접 및 실기 시험수당	5급 이상 (일당)			
	6급 이하 (일당)					6급 이하 (일당)			
	종사원 (일당)					종사원 (일당)			
문제집수당					문제집수당				
문제선정의수당					문제선정의수당				
감시수당	공휴일		20,000원		감시수당	공휴일		30,000원	
	평일		10,000원			평일		15,000원	

관 련 법 령 발 취

지방공무원임용령

제48조 (시험위원 등) ⑤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
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

제2조 (수당)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

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< 행정자치부 >

◇ (10) 시험수당 ② 기준액 → Page 66

◇ 행정자치부 재경 13310 - 150 (2000. 2. 2)호

「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 통보 」

⑤ 시험감독비 : 일당 30,000원

※ 변경사유 : 국가의 경우 시험감독비 일당단가가 인상되어 지방자치단체도
동일한 기준으로 인상 조정